2013년 OECD 회원국의 농정 검토와 평가 *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들어가는 글

OECD는 해마다 회원국의 농정변화와 농업보조 수준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가지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1]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농식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흥국가, 곧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도 다루고 있다. OECD가 개발한 이른바 생산자 보조 상당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의 산출 결과도 제시되는데, 이는 농업보조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된다.[2] 이 보고서는 세계 전체의 농식품 시장 동향과 OECD 회원국별 자세한 농정 변화를 담고 있어 유용하다.

여기서는 2012년과 2013년 상반기까지 포함하여 최근에 나타난 회원국별 주요 농정 변화를 주요 이슈별로 선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내용 중 더 자세한 논의나 정보는 각주로 제시하였다. 단, PSE의 변화 추이는 생략하였다.

* (songsooc@gmail.com).

1) 이 보고서는 "농업정책 검토와 평가(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으로 다음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http://www.oecd-ilibrary.org/agriculture-and-food/agricultural-policy-monitoring-and-evaluation_22217371;jsessionid=oy2kw7q1o1il.x-oecd-live-01).

2) PSE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회원국별 데이터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음: (http://www.oecd.org/agriculture/agricultural-policies/producerandconsumersupportestimatesdatabase.htm).

2. 경제 및 시장 전반의 변화

경제 위기가 지난 5년 후 2012년의 세계 경제는 이전보다 더욱 쇠약해졌다. 재정 적자가 감소하여 건실해진 측면이 있으나,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신뢰가 추락하여 경제가 쇠약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목받고 있는 신흥경제국의 GDP 성장세는 2011년보다 낮아졌다. 이러한 성장 둔화는 중국을 포함한 일부 신흥경제국들에 의한 긴축 통화정책과 유로지역(euro area)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1차 상품의 국제 가격은 2012년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가격 수준에 견주어 아직은 높은 수준이다. 2012년의 에너지 가격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IMF 식량 가격지수(food commodity price index)는 2011년 수준에서 2% 정도 하락하였다.[3] 2011년까지 식량 가격지수의 급격한 상승은 높은 곡물 가격에 의해 초래된 것이었다. 2012년에 전반적인 식량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 수준과 견주어 일부 품목은 5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농산물의 국제가격이 하락한 것은 주요국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강세 현상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회원국별 농업정책 주요 변화

OECD 회원국들은 농업보조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덜 왜곡된 정책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장 가격보장제도와 같은 생산과 관련된 여러 조치들과 비교해 보면 2010년의 OECD 농업장관회의(Meeting of Misters of Agriculture) 이후, 일부 농업 정책들이 목표 지향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① 식량안보의 향상, ② 투자 조성과 혁신, ③ 농업 부분의 위험 요소 관리 향상, ④ 환경성과를 위한 유인책 구조 강화, ⑤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전략 등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일부 신흥 경제국에서는 국내 농업 보조정책을 강화시키며 농산물 자급률을 높이려는 경향을 띄기도 했다. 이러한 자급률 목표는 높은 가격보조와 여러 생산증대 조치들을 수반하게 된다.

3) IMF 가격지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imf.org/external/np/res/commod/index.aspx).

3.1. 다년도 계획 아 시행 정책 조치

많은 국가들이 거시적인 다년도 계획(multi-year framework)의 틀 안에서 농업정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계획 대부분은 2012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일부 정책은 2012년 혹은 2013년 안에 만기되었으며, 새로운 계획이 시작된 경우도 있다.

먼저, 캐나다의 성장(Growing Forward) 정책은 2008년에 시작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제2단계로 Growing Forward 2가 2013-2018년에 시행된다.[4] 아이슬란드의 경우도 양, 낙농, 원예생산 분야에서 정부와 농업인 협회 간에 체결된 다년간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2012년 가을에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었다. 러시아는 2008～2012년 계획 이후 농업발전 8개년 계획(State Program for Development of Agriculture 2013～2020)을 수립하였다(Vassilieva 2012).

2013년에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농업경영 2020 프로그램(Agribusiness 2020)을 출범시켰다(Flake and Zharmagambetova 2013). 인도네시아는 2012년 말에 새로운 식품법(Food Law)을 제정하였다.[5] 이는 식량 주권을 지키고 식량자급률을 높임으로써 식량 안보를 이루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2년 멕시코는 농업부문개발 프로그램(Sectoral Development Program 2007-2012), 지역개발 프로그램(Programa Especial Concurrente 2007-2012), 기후변화전략(Mexican Climate Change Strategy 2009-2012)을 마무리하였다. 2013-2018년 국가개발 프로그램(National Development Program) 아래 멕시코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8년 농업법(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이 2012년에 종료되었으나, 의회가 새로운 농업법을 제정하지 못함에 따라 2008년 농업법이 1년 연장된 상태이다.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7개년 계획으로 2013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2013년 6월에 농업이사회(council)와 의회(parliament) 및 집행위원회(commission)이 CAP 개혁내용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2014~2020년의 다년간 재정지출 계획이 확정되었다(European Parliament 2013). 주요 조치변화는 농업보조와 환경요건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과 국가 간의 보조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최종 안은

4) 캐나다의 Growing Forward2 프로그램은 농업혁신, 농산물 유통, 농업경쟁력, 경영위험관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억 캐나다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http://www.agr.gc.ca/eng/about-us/key-departmental-initiatives/growing-forward-2/?id=1294780620963).

5) 2012년에 제정된 인도네시아의 식품법 전문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doa.go.th/psco/images/News/FOOD-LAW-NO-18-2012_ENG_PRESIDENT-SIGNED.pdf).

2013년 말에 제시될 예정이며, 새로운 CAP은 2015년부터 적용된다.

스위스는 농업정책개혁(Agricultural Policy Reform 2011)을 2011~13년에 이행하였으며 2014~17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Ali 2008). 새로운 계획은 충분한 식량공급, 천연자원 보존, 자연경관의 유지와 관리 및 분산된 거주 장려 등에 더욱 목표화된 직접지불 조치를 담으려 하고 있다.

3.2.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정책

소비자의 식량안보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특정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곡물에 대한 자급률을 95%로 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까지 쌀, 설탕, 콩, 옥수수, 소고기를 자급하도록 정하였다. 일본도 식량, 농업, 농촌지역 기본계획(Basic Plan on Food, Agriculture and Rural Area)아래 2020년까지 칼로리 공급량 기준으로 50%를 자급하는 목표를 내세웠다.[6] 이는 2008년 기준인 41%보다 향상된 수준이다. 카자흐스탄은 기본 식량에 대해 80%의 자급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농업경영 2020 프로그램에서는 이에 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식량안보에 관한 원칙(doctrine)에서 곡물, 설탕, 채소기름, 육류, 유제품 등을 포함한 농산물에 관해 최소한 80~95%의 자급률을 유지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스라엘도 일부 농산물에 대해 목표 자급률을 정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터키도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식량생산 증대를 농업정책의 보편적인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 개선 사이의 관계는 약하다.[7] 또한 빈곤타파, 사회안전망 조치 등은 식량자급률과 직접 관계는 없는 정책이나 국가의 식량안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급률 목표 설정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가격보조와 생산을 직접 촉발하는 조치 도입을 초래하기도 한다.

3.2.1. 생산과 연계한 시장가격보조의 유지

이 보고서가 다루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시장보다 높은 수준의 농업보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국내 가격은 수입관세나 쿼터 등 국경조치(border measure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국내 가격통제와 공공수매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조치들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2012년에도 거의

6) 일본의 기본계획 핵심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다: (http://www.maff.go.jp/e/pdf/basic_plan.pdf).

7) 이러한 견해는 주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농산물 수출국들의 것이다. 반대로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등 주요 농산물 수입국들은 식량안보 보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식량자급률 확충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변화 없이 시행되었다.

중국의 경우 쌀과 밀의 최저가는 전년 대비 4~18% 상승했다. 생산비가 높아지면서 2007년 이래 연속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아이슬란드의 겨우 특이하게 농업인협회와 소비자 측을 대표한 노동조합 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마다 여러 유제품의 도매가격을 결정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쌀 최저가가 25%정도로 상승한 반면에 설탕은 16% 상승에 그쳤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콩의 수매조치를 개발하고 있다.

2012년에 노르웨이는 대부분의 목표가격을 높였다. 우크라이나는 원유(raw milk)에 대한 최저가격을 재도입하였다. 브라질은 다양한 농산물에 대해 가격보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을 목표로 시행하기도 한다.

EU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가격 때문에 기존의 수매를 통한 가격보조 조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러시아는 2012년 가뭄에 대응하여 곡물시장에 개입하였고, 빵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 재고를 방출하였다.

3.2.2. 신흥경제국의 투입재 보조

투입재에 대한 보조는 신흥경제국에 특히 중요하고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이 조치의 변화는 제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비료의 생산과 사용에 보조하고 있는데 주로 비료작물이 그 대상이다. 중국의 비료보조는 면적을 기준으로 주로 지급된다. 러시아의 경우 농업 생산자에게 비료보조가 중요한데 2013년에 새로운 면적기준 보조에 통합됨에 따라 비료보조가 철폐되었다.

브라질과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에서 이자보전과 자본보조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서 금융지원은 비농업 활동과 관련한 투자까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밖에도 연료 보조는 OECD 회원국과 신흥경제국이 공통으로 지급하고 있는 보조의 형태이다.

3.3. 생산쿼터로 인한 높은 생산자 가격

많은 국가에서 생산쿼터는 국제가격 보다 국내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일본의 경우 개별적인 쌀 농가에 할당되었던 생산쿼터를 2012년도에 감축하였는데, 이것은 쌀의 예상수요에 근거한 생산량 조절이었다.[8] 반대로 EU의

8) 미국의 관점에서 정리한 일본의 쌀 수입정책에 관해서는 다음 웹 사이트 참조:
(http://www.ers.usda.gov/topics/international-markets-trade/countries-regions/japan/policy.aspx#.UnwV2hwW0jg).

우유쿼터는 2008년 농정개혁 이후 해마다 1%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4월에 폐지될 예정이다(European Commission 2012). EU의 설탕쿼터는 적어도 2015년까지 잔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 쿼터연장에 관한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우유쿼터와 노르웨이의 염소우유 쿼터는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 노르웨이는 지역적으로 쿼터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에 노르웨이 정보는 쿼터 이상으로 생산해도 이를 허용하는 기준을 7%에서 3%로 하향 조정하였다.

3.4. 면적기준 보조의 중요성

가격보조와 비교해서 농경지 면적이나 사육 두수와 연동된 보조는, 특히 현재의 면적이나 두수가 아니라 과거기준의 자료에 근거하여 시행할 경우 생산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왜곡효과가 적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시장가격 보조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면서 이런 형태의 보조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스위스와 노르웨이에서 생산과 연계된 가축 두수 보조는 특히 중요하다. 중국은 최근에 면적 기준 보조를 큰 폭으로 늘려왔다. 특히 곡물에 대한 직접지불과 비료 및 개량종자에 대한 보조 대부분은 면적당 고정 지급률(flat-rate basis), 곧 곡물 파종면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이러한 면적기준 보조는 2012년에 1,078억 위안(약 171억 달러)에 이른다.

일본에서는 논 면적당 보조가 농가소득보조(Farm Income Support Payment) 조치의 중요한 요소이다. 카자흐스탄에서 면적보조는 새로운 정책조치에 속하는데 추정된 생산비용에 기초하여 다양한 작물 생산자에게 지급된다. 러시아에서 면적기준 보조는 중요하지 않으나 2013년부터 작물 생산자들은 이전의 투입재 보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면적기준 보조를 받게 될 예정이다.

OECD 회원국에서 현재 생산수준과 연계되지 않은 보조가 농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EU의 경우 단일보조(Single Payment Scheme, SPS)와 12개 신규 회원국에 적용되는 단일면적보조(Single Area Payment Scheme, SAPS)는 현재의 시장변수들과 연동되지 않고 지급된다. 2012년에 총 보조액은 2011년과 견주어 0.9%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전체 PSE 중 45% 이상을 차지한다. 일본은 과거 수급권(historical entitlement)을 기준으로 면적당 고정 보조를 밭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멕시코는 직접 지불 프로그램(PROCAMPO)을 2013년까지 연장하였는데 2012년 지급규모는 2011년에 견주어 11% 증가하였다.

노르웨이의 경우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과 낙농생산자에 대한 보조가 과거 수급권에 기초한 것이지만 생산해야 지급되는 조건이다. 스위스의 면적기준 보조는 면적당

지급되나 생산요건은 없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과거 수급권에 기초한 보조가 양고기 생산자에게 지급되나 이 수급권은 매매가능하다. 다만, 겨울철에 최소한의 양 사육두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직접지불(Direct Payment)과 경기대응 보조(Counter-Cyclical Payment, CCP)의 경우에도 과거 기준연도의 면적과 단수에 기초하여 보조가 지급된다.

3.5. 위험관리 정책 동향

농업인들은 농가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위험요소에 맞닥뜨리게 된다. 가격의 변동뿐만 아니라 기후와 연관된 생산량 변동, 가축질병 등의 요소들은 기대치보다 낮은 생산량을 초래하기도 하며, 현금흐름과 농가 소득에 큰 파급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경기대응 보조(counter-cyclical payment)를 제공한다. 반면에 OECD는 정부 정책이 재앙의 위험(catastrophic risk)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시장기능을 통해 개별 농가의 능력을 넘어서는 통상적 변동위험에 대응하여 보험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박보험(hail insurance)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위험요소에 대해 농가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수준으로 관여하게 되며 보험보조를 지급하고 있다. 끝으로, 통상적인 위험요소들은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적절한 생산 결합(production mix)에 관한 결정부터 충분한 금융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까지 책임 있는 사업가로서 농가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러한 책임을 농가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3.6. 재해 대응 정부지원

일부 국가들은 기후로 말미암아 단수가 하락한 경우 보조를 지급한다. 브라질은 "Garantia Safra" 조치에 따라 특정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규모 농가에 보조를 지급한다. 이러한 보조 규모는 2012년에 전년도 대비 5배 증가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재해 지원프로그램인 "CADENA"의 정부 지출이 2010~2012년에 약 2.4배 증가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긴급 융자(emergency loan)의 이자율이 2012년의 가뭄 이후 감소하였다.

재해 보조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정형화되어 있기보다 관련 당국의 지

시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2년에 CAP 보조는 북부 이탈리아의 지진과 기후 관련 문제가 발생한 이후 당초 예정된 시기보다 앞당겨 지급되었다. 아이슬란드의 재해 보조도 2010년과 2011년에 발발한 화산 폭발과 관련된다. 반면에 멕시코는 2011~2012년에 연이은 가뭄으로 다양한 보조와 보험 배상조치를 발전시켰다. 미국에서는 자연재해 이후 보험회사들이 작물 보험 프리미엄(crop insurance premium)에 대한 지급계획을 확장하도록 장려되었다.

호주는 농가의 자율적인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춘 가뭄구호(drought assistance) 프로그램을 개혁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2012년 중반에 기후재해와 관련한 이자 보조(exceptional circumstances interest rate subsidy)를 철폐하였다.

3.6.1. 소득 안정화를 위한 경기대응 보조

일부 국가들은 농산물 가격변동 등의 경기 흐름에 따라 보조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족불 보조(deficiency payment)는 시장가격이 사전에 정한 가격수준(미국의 융자 부족불 지급(loan deficiency payment), 멕시코의 목표수익보조(target revenue payment))이나 과거 가격에 기초한 가치보다 하락할 때(일본의 쌀 부족불 보조), 또는 계측된 생산비용보다 낮을 때(일본의 밭작물 보조) 발동된다.

미국의 CCP는 시장가격과 목표가격 간의 차이를 보상한다. 2012년에는 높은 시장가격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급 계획들이 대부분 발동되지 않았으나, 이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좀 더 복잡한 수익성 계산과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들은 가격과 생산량 변동으로부터 수익 상실을 부분적으로 보상해준다. 미국의 ACRE(Average Crop Revenue Election)은 산출된 주(state) 및 농가 수준의 수익 기준점에 근거하여 보조를 지급한다. ACRE 프로그램은 2012년에도 유지되었지만, 높은 시장 가격으로 인해 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발동되지 않은 상황이다.

캐나다의 농업안정(agriStability) 프로그램은 전년도 대비 소득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상해준다.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농업안정 프로그램은 2011년 대비 26% 감소했던 2012년을 제외하곤 2007년 이후 상당한 규모로 지급되고 있다.

3.6.2. 보험과 선물시장 참여 보조

브라질은 상업농과 가족농에게 작물과 축산 보험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범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에 보험 보조는 농가 전체 보조의 16% 정도를 차지하였다. 보험 보조의 조건은 농업 지역화(agricultural zoning)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화

는 기후와 연관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 토양, 작물 주기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여 가장 적합한 작물파종 기한을 따르는 것이다. 2012년까지 40개 작물과 총 26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 지역화가 적용되었다.

2012년에 칠레는 두 가지 새로운 형태의 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각각 소의 보건과 사망, 밀과 옥수수의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다루는 조치이다. 이 보험 프로그램은 농가 규모와 농가당 최대 보상액에 따라 프리미엄의 50~90%를 보조한다.

중국은 농업보험 지원조치를 2007년에 도입하였는데, 그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험 프리미엄의 비용은 중앙정부(약 40%)와 지방정부(약 33%), 농가(약 20%)가 각기 다른 비중으로 공동 부담하는 형태이다. 지리적 보상범위는 차츰 증가하여 2012년까지 모든 주의 자치구가 이에 포함되었다.

EU의 보험 보조는 대부분 국가 단위에서 시행된다. 다만 회원국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EU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국가 계획과 68 조항(Article 68)을 따르는 보험 보조는 2012년에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7.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와 혁신에 관한 정책

농가 안팎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기적으로 R&D는 농가와 식품산업의 생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실질 R&D 지출액을 해마다 1%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예산 감축 등의 이유로 2007년 이후 이러한 투자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7.1. 혁신 정책에 앞장서는 국가들

호주는 2012년 농촌 R&D 정책 선언문(R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Policy Statement)을 발표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2012). 여기서는 R&D 체제 개선을 위해 4개 영역의 제안을 하고 있는데, ① R&D 체계의 투명성과 책임 향상, ② 농촌 R&D 분야의 협력, ③ 생산성 향상 추구, ④ R&D 투자의 효율성 증대 등이다.

멕시코의 MASAGRO 투자계획(investment initiative)은 농업부(Ministry for Agriculture)와 국제옥수수밀연구소(International Center for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IMMYT) 간 협력의 산물이다.[9] 2010년 설립 이후 종자의 유전적 다양성과 옥수수와 밀의 생산

9) MASAGRO 프로그램과 관련 뉴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 사이트 참조: (http://masagro.mx/index.php/en/).

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과 이들 작물의 지속가능한 생산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MASAGRO 프로그램에 통합된 기관과 프로그램 등은 2011~12년에 증가했으며, 현재는 국립농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와 일부 연구기관 및 대학을 포함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연구 투자는 농업 정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 혁신 프로그램은 "1차 산업 성장 파트너십(Primary Growth Partnership)"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는데,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임업과 식품 분야의 1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10]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EU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EIP(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은 혁신의 수용력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성과를 농가 경영에 적용 및 응용하려는 것에 중점을 둔다.

3.7.2. 농업 기반 투자

농업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양상은 2012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관개체제의 향상에 집중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칠레는 2022년까지 물 저장능력을 30%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국가 관개전략(National Irrigation Strategy, NIS)을 개발하였다.[11] 이는 주로 중부지방의 가뭄해결을 위한 조치이다. 이 전략에는 강수를 개선하기 위한 구름 씨뿌리기(cloud seeding)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물 사용자들을 조직화하였다.

중국은 관개시설과 농업 선진화를 위해 2012년에 632억 위안(약 100억 달러)을 지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 대부분을 1~2차 운하(canal)를 활용한 관개수 전달에 사용하였다.

3.8. 농업환경 조치(agri-environmental policy)의 중요성

토지나 물 같은 자연자원의 사용에서 농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은 중요한 의제이다. 농업 정책은 자원의 이용에 큰 영향을

10) 자세한 정보는 다음 뉴질랜드 정부 웹 사이트 참조:
(http://www.mpi.govt.nz/agriculture/funding-programmes/primary-growth-partnership.aspx).

11) NIS는 장기적으로 총 15개의 보(reservoirs)를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http://www.oecd.org/env/resources/Chile.pdf).

미치므로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다루기 위해 특정한 조치들을 시행한다. 이상적인 정책 조치는 환경으로부터 편익을 반영하여 계획되어야 하지만, 이는 대부분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 사실 환경문제를 다루는 많은 조치들이 국가 정책의 틀 안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미국의 농업 지원 프로그램들 중 일부는 그들 정책의 틀 안에서 환경 및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토지와 수자원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물 사용을 절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다. 미래 물 사용에 관한 계획의 하나로 머레이 다링(Murray-Darling) 유역의 균형회복프로그램(The restoring the balance in the Murray-Darling basin)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사용되지 않는 물을 구매하고 관개 효율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둔다. 농가와 환경 간 절수된 것을 공유하였고, 최소 50%의 절약된 물이 호주 정부로 전달되었다.

칠레의 토양회복(soil recovery) 프로그램은 주요 지점의 가용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2012년에 개정되었다. 중국은 농경지에서 산림으로, 목초지에서 초지로 전환을 위해 176억 위안(약 28억 달러)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보조는 이미 전환된 토지에도 제공되었다. 그러나 최근 곡물 자원의 안보 이슈가 대두되면서 토지 전환율이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서부의 8개 주에 분포한 초지의 생태보호를 위해 방목의 축소, 풀 다양성 증대, 동물 육종 또는 투입재 보조 등에 2012년에 총 136억 위안(약 22억 달러)을 배정하였다.

프랑스는 농업 생태계획(agro-ecological plan)을 도입하였다. 이는 농업지식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웹 기반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농업환경훈련을 강화시키며 생태 농업의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오스트리아는 2012~15년 질산염(nitrate) 대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질소비료의 사용 기간과 비료 저장에 대한 지침 및 질산염의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질산염 대응(nitrates action) 프로그램은 질산염의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2011년에 새로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Direct Payment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을 시행하였는데, 주로 생물다양성 증대와 비료 및 농약사용량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8.1. 특정 조치의 대상이 되는 유기농업

브라질은 유기농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유기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덴마크는 새로운 유기농 식품 표시제를 도입하여 유기농 재료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기농 과일과 산딸기류 식품 생산을 위한 새로운 지원 계획을 도입하였다. 프랑스는 바이오 꿈 2017(Ambition Bio 2017)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유기농 생산을 발전시키고, 유기농 식품의 생산 공정 체계화를 목표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농업경제연구소 2013).

한국은 다양한 인증조치들을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친환경 인증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이 후에 외국 기관에 의한 유기 식품 인증의 동등성(equivalence)을 인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12] 이 새로운 규정은 2013년 6월부터 적용된다. 터키는 유기농업과 우수 농가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터키 정부는 현재 유기농업의 비중(1.9%)을 2016년 3%, 2023년 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8.2.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정책

2011년 후반 호주는 탄소농업 계획(Carbon Farming Initiative) 프로그램을 도입했다.[13] 이 프로그램아래 농가와 토지 경영자는 탄소를 저장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통해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을 확보할 수 있다. 배출권은 자율적으로 탄소 상쇄시장(carbon offset market)에서 판매될 수 있고, 호주에서 2012년에 발효된 탄소가격제도에 따라 탄소 감축 의무를 상쇄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특정 배출권 프로그램이 저탄소 농법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 칠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완화 행동계획과 시나리오(Mitigation Action Plan and Scenario)" 프로젝트, "국가 적정 온실가스 완화대책(National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3개년 저탄소 배출 능력형성"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칠레는 2013년 초에 녹색성장 전략 측면에서 에너지 집약적인 농업부문에 신재생 에너지(non-conventional renewable energies, NCRE)의 사용을 촉진하는 협정에 서명하였다.

한국은 2012년에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Low Carbon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14] 일본은 기후변화의 영향 문제에 대응하는 영농방식

12) 유기농산물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증 또는 동등성(equivalency)을 인정하는 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에 미국과 캐나다가 USCOEA(US-Canada Organic Equivalency Arrangement)에 합의하였고, 2011년에는 EU와 캐나다가 동등성 협약에 서명하였다. 2012년에는 미국과 EU가, 2013년에는 미국과 일본이 유기농산물 동등성 협약에 서명하였다. 이밖에도 캐나다는 한국, 호주, 코스타리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한국, 인도, 대만 등과 논의 중이다. 그밖에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 참조: (http://www.ota.com/index.html).

13) 자세한 사항은 호주 환경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웹 사이트 참조: (http://www.climatechange.gov.au/reducing-carbon/carbon-farming-initiative).

14) 한국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는 일반 농산물과 견주어 에너지와 농자재 투입량을 낮추는 녹색 농업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 농산물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 참조:

채택이 2011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하였다.

EU의 농업 및 임업 배출권 규정은 곡물과 초지에서 방출되는 배출량을 2013년부터 포함하게 된다. 오스트리아는 연방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국가전략(National Adaptation Strategy to Climate Change)을 도입하였다.[15] 이는 모든 정책의 계획과 결정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기후변화 효과를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9. 농촌 가정, 농업 근로자, 소규모 농가경영을 위한 새로운 조치

중국의 농촌 빈곤완화 및 개발(Rural Poverty Alleviation and Development) 프로그램은 2011년 후반에 도입되어 농촌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16] 이는 교육과 의료, 주거 계획, 건축 및 교통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소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현금을 보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칠레에서 새롭게 제정된 법은 고용자와 근로자 집단 간의 단체 협약을 인정하고 가임기의 여성 계약 근로자들에게 보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농촌 근로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주민 사회의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토착지역 개발 프로그램(Indigenous Territorial Development Program)"에 소요되는 2012년도 예산을 전년도 수준보다 50% 증대하였다.

2013년에 미국은 새로운 소액융자(microloan)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가계의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에게 35,000달러 미만의 대출을 허용함으로써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지원하고 있다(USDA 2013).

3.9.1. 식량 안보와 동식물 보건을 위한 규제 체제

수입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무역이 확대되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식품안전, 동식물 건강 위험, 바이오 안보(biosecurity)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은 식품안전과 동식물 위생 분야의 관계 기관 사이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2012년 1월에 호주 수상과 모든 주의 여당 대표들이 모여 바이오안보에 관한 정부간 협약(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Biosecurity)에 서명하였다.[17] 이는 불필요한 생명

(http://www.smartgreenfood.org/jsp/front/index.jsp).

15) EU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전용 웹 사이트 참조: (http://climate-adapt.eea.europa.eu/).

16) 예를 들면 680개 가난한 군(County)에 있는 2,600만 명의 초중등 학생들에게 점심 보조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http://www.chinadaily.com.cn/m/guizhou/2012-11/21/content_15948171.htm).

17) 호주 정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는 바이오 안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 안

복제를 줄이고 관할권 간의 자원 사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한다. 칠레에서는 2012년에 과학자 사이의 식품안전 네트워크(Scientists for Food Safety Net)가 창설되었다. 이 단체는 과학에 기초하여 안전과 품질 정책을 계획하고, 식품안전과 품질문제와 관련된 사람들 간 교류를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칠레는 국내 소비재에 함유된 살충제 성분의 수준을 줄이기 위해 농업 가축 서비스(Agriculture and Livestock Service), 보건부(Health Ministry), 칠레 수산 서비스(National Fishing Service) 등이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는 동물과 채소 위생에 관한 정책 지침을 제시하는 국가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관세연맹아래 동식물 위생(SPS) 기준과 기술규정의 조화와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였다.

3.9.2. 동물 복지에 관한 관심

동물 복지 정책은 일부 국가에서 차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2011년 7월에 호주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사료와 도살가축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정책을 실시했다. 이 규정은 2012년 말까지 다른 사료 및 도살가축 시장으로 확대 적용되도록 계획되었다. 이 새로운 제도는 가축 수출업체로 하여금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표준에 부합하는 동물 복지의 보장을 위해 공급체인을 설정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가축의 운송, 생축의 취급과 가공, 공급망 통제, 공급망을 통한 가축의 이력제(traceability), 이행을 보장하는 독립된 감사(audit) 등과 관련된다. "생축 수출경영 지원 패키지(Live Exports Business Assistance Package)"가 새롭게 발족되어 동물 복지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동물 복지 표준은 스위스와 EU의 직접지불 체제에서 차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암퇘지들이 분만 틀에 머물러야 하는 연간 최대 일수를 축소했고, 덴마크는 정부의 수의학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동물 복지와 관련된 지표를 구축하였다. 헝가리는 동물 복지와 관련된 투자에 6,600만 유로(약 8,500만 달러)의 국가 보조를 투입하였다.

3.9.3. SPS 조치에 따른 무역 효과

SPS 조치는 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인도네시아는 식량안보와 검역 및 식품표시제 표준에 관한 수입 요구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였다. 가공식품의 수입

보 월보(Biosecurity Bulletin)" 를 발간하고 있다:
(http://www.daff.gov.au/biosecurity/about/reports-pubs/biosecurity-bulletin).

에는 생산지 등록과 보건부의 수입 승인 정보가 필요하다. 반면에 일본은 광우병(BSE)의 확산을 막기 위한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2013년 2월 1일부터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프랑스로부터 30개월 미만의 소고기가 수입되며, 네덜란드로부터는 12개월 미만의 송아지 고기가 수입된다.[18] 2012년에 러시아는 SPS 조항에 근거하여 다양한 무역 규제조치들을 세웠다. 이러한 규제들은 축산 및 돈육 가공 상품의 수출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2010년에 구제역 발발 이후 대형 축산 농가와 가축사육 및 부화 사업체를 대상으로 의무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축산 농가와 농가를 출입하는 수집상에 대해서는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한, 허가를 취득한 농업인 또는 등록 농가와 수집상을 대상으로 의무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2012년에는 새로운 돼지고기 이력제(Pigmeat Farm Traceability System)을 시범사업도 출범시켰다.[19]

멕시코는 2012년 6월에 예리스코(Jelisco) 주에서 발발한 조류 독감(avian flu) 이후 "식품보건, 안전 및 품질 서비스(National Food Health, Safety and Quality Service)"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Hernandez and Branson 2012). 또한, 2,200만 마리의 조류가 폐기되었고 예방접종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2년 11월에 조류 독감은 공식적으로 근절된 것으로 공표되었다.

미국의 식약청(FDA)과 뉴질랜드의 1차 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는 식품안전 체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에 서명하였다.[20]

3.10. 농산물 수출입을 제한하는 국경조치

국경 조치(border measures)는 국내 시장가격이 국제수준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단으로 관세, 관세할당(tariff-rate quota, TRQ), 국영무역(STE), 수입 허가제, 수출 보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무역을 억제하거나 세입과 시장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채택된다. 대부분의 국경조치와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2012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와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생축과 포장육의 수입쿼터를 2011년에 17만 톤에서 2013

18) 일본의 정책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 참조: (http://www3.jma.or.jp/foodex/en/sc/category02.html).
19) 돼지고기 이력제에 관해서는 다음 전용 웹 사이트 참조: (http://pig.mtrace.go.kr/index.do).
20) 미국은 2011년에 제정한 "식품안전 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에 따라 4년 간 약 4만 곳의 외국시설을 검사해야 하는데, 양국 정부 간 상호인증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덜 수 있게 되었다.
(http://fda-news.registrarcorp.com/2012/12/fda-recognizes-new-zealand-food-safety-system/?lang=ko).

년에 8만 톤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옥수수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입쿼터를 적용하였다. 설탕과 쌀에 대한 종량세(specific tariff)는 세계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되고 있다.[21] 중국도 급변하는 국제가격의 파급영향을 완화시키고 높은 물가상승률을 낮추려고 농산물에 대한 실행 관세(applied tariffs)를 종종 조정하고 있다.

2012년 7월에 이스라엘은 일부 농식품을 대상으로 수년간 적용되어 온 방대한 양의 관세를 축소하거나 없애기로 결정하였다. 멕시코도 2012년 11월에 300개 이상의 농식품 관세라인(tariff line)을 일방적으로 축소키로 결정하였다.[22][23] 이 가운데 일부 농식품에는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관세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감축의 무역효과는 작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의 농식품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아래 무관세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에 호주의 밀 수출 승인조치(Wheat Export Accreditation Scheme)와 밀 수출 부과금(Wheat Export Charge)은 밀 수출 유통 개정법(Wheat Export Marketing Amendment Act, WEMAA)에 따라 폐지되었다.[24] EU는 일부 축산물의 수출환급(export refund)을 축소 내지 점진적으로 폐지하였다. 또한, 가공용 냉동 소고기에 대한 수입쿼터의 관리방식을 단순화 하였다. 2012년 11월에 EU와 남미 10개국은 이전의 바나나 분쟁을 종결하는 협정에 서명하였다. EU의 바나나 수입체제는 해마다 관세를 축소하는 형태로 대체되었다.[25]

빻은 옥수수(cracked maize)의 수입량이 폭증하자 칠레는 2012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10.8%의 임시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2012년 6월에는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된 밀가루에 대해 9.7%의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하였다.

3.11. EU 외연국 확대

2013년 7월에 크로아티아 공화국(Republic of Croatia)이 28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EU는 더욱 확대되었다. 앞으로 공식적인 가맹이 예정된 국가는 아이슬란드, 마케도니아

21) 종량세는 수입 농산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종가세(Ad valorem)와 달리 수입물량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실행관세는 수입국이 실제로 수입 시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수입국은 WTO에 약속한 양허관세(bound tariff)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이보다 낮은 수준의 실행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22) 관세라인(tariff line)은 HS(Harmonized System)에 따라 적용되는 상품코드로 최소 6단위로 표현된다.

23) 일방적(unilateral) 조치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그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하는 호혜주의 원칙(reciprocity principle)을 적용하지 않고, 자국의 무역조치를 완화는 것을 말한다.

24) 개정된 법 전문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2A00170)

25) EU의 바나나 분쟁은 WTO 역사상 가장 오래 진행된 분쟁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따라 EU는 바나나의 종량세를 2009년 톤당 148유로에서 2017년에 114유로로 감축하기로 하였다(WTO 2012).

(Macedoni), 세르비아(Serbia), 터키 등이다.[26]

2012년 8월에 러시아는 WTO 회원국이 되었으며, 가입 의정서에 따라 수입관세를 감축하였다. 카자흐스탄은 WTO 가입 절차 과정에 있으며, 상품의 시장접근(market access)에 관한 양허안(Schedule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s)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와 수출보조에 관한 사항도 협상중이다.[27]

3.11.1. 새롭게 발효된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

2012년에 발효된 FTA로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와 요르단,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가 홍콩, 몬테네그로(Montenegro), 페루, 우크라이나와 각각 체결한 협정, 칠레와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28] 인도네시아의 비준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ASEAN과 호주 및 뉴질랜드 FTA는 모든 체약국에서 발효되었다. 2013년 3월에는 EU와 페루 간 FTA가 발효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남부 아프리카 14개국 간 FTA가 완전히 이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2006년에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P4) 사이에 체결되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이다. TPP에는 P4와 더불어 호주, 말레이시아, 페루, 미국, 베트남이 참여하고, 2012년 10월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최근에 일본도 협상대상국으로 참여하고 있다.[29] 모든 국가들이 서명한 최종 동의안이 체결된다면 TPP는 세계 경제 생산량의 40%가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30]

2013년 2월에 EU와 미국은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의 협정을 진수시키는데 필요한 내부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다(USTR 2013). 2013년 3월에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협정을 진수시키기 위한 회원국들의 허가를 요청하였다. 또한, 미국과 무역관계의 미래에 관한 영향 평가서와 TTIP의

---

26) EU의 회원국 목록과 가입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EU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europa.eu/about-eu/countries/index_en.htm).

27) AMS는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보조로 WTO 규율에 따라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된다: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ag_intro03_domestic_e.htm

28) 양자간 FTA 체결현황과 협정문 및 협상에 관한 소식들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bilaterals.org/?lang=en

29) 특히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은 지금까지 민감한 농업분야를 보호해 왔던 터라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 농업부문의 반대가 큰 가운데 이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최근의 정보는 다음 아사히 신문(Asahi Shimbun)의 웹 사이트 참조: http://ajw.asahi.com/tag/TPP

30) TPP 협상의 진행사항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ustr.gov/tpp

잠재 효과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배포하였다.

3.12. 미국 원산지표시제(COOL) 분쟁

2012년 6월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의해 제기된 WTO 분쟁에서 WTO 상소 기구(Appellate Body)는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COOL) 규정에 관한 이전의 WTO 패널(Panel)의 판결 내용을 재확인하였다(Jurenas and Greene 2013). 패널의 판시 내용은 가공된 육류제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 요구조건이 WTO의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협정에 따라 명시된 미국의 의무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상소기구는 COOL 요건이 수입품과 국내산 제품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TBT 협정의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조항에 위배된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3년 5월에 가공 육류제품의 COOL 요건을 개정하였다.[31]

참고문헌

농업경제연구소. 2013. 프랑스의 유기농 실행계획 「Ambition Bio 2017」과 시사점. NHERI 주간 브리프 2013.9.2. (http://www.nheri.re.kr/lib/pdf_nheriweek_view.php?idx=15082&down_type=NO&file_no=1610&file_path).

Ali, Ferjani. 2008. "Agricultural Policy(AP2011) Reform and the WTO: Potential Impacts on Swiss Agriculture. (http://ageconsearch.umn.edu/bitstream/6638/2/cp08fe18.pdf).

Australian Government. 2012. R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Policy Statement. (http://www.daff.gov.au/__data/assets/pdf_file/0004/2176222/research-and-development-policy-statement.pdf).

European Commission. 2012. Evolution of the Market Situation and the Consequent Conditions for Smoothly Phasing-Out the Milk Quota System: Second "Soft Landing" Report. Brussels. (http://ec.europa.eu/agriculture/milk/quota-report/com-2012-741_en.pdf).

European Parliament. 2013.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on the Multilateral Financial Framework 2013~2020 and the CAP: Note. Brussels. (http://www.europarl.europa.eu/studies).

Flake, L. and Z. Zharmagambetova. 2013. Kazakhstan Outlines Continued Strategy and Support for Cattle Sector. GAIN Report,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31) 지금까지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WTO에 제소된 분쟁사례는 멕시코가 미국을 제소한 사건(DS386), 캐나다가 미국을 제소한 사건(DS384), 인도가 미국의 섬유와 의류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에 대해 제소한 사건(DS243) 등 모두 미국의 규정에 대한 것이다: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Hernandez, G. and A. Branson. 2012. High Pathogenic Avian Influenza Outbreak in Jalisco. GAIN Report No. MX2040.

Jurenas, R. and J. Greene. 2013. Country-of-Origin Labeling for Foods and the WTO Trade Dispute on Meat Labeling.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S 22955. (http://www.fas.org/sgp/crs/misc/RS22955.pdf).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2013. USDA Finalizes New Microloan Program. (http://www.usda.gov/wps/portal/usda/usdahome?contentid=2013/01/0010.xml).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2013. White House Fact Sheet: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fact-sheets/2013/june/wh-ttip).

Vassilieva, Yelena. 201. Russian Federatio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 2013-2020. GAIN Report No. RS1270,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http://gain.fas.usda.gov/Recent%20GAIN%20Publications/Agriculture%20Development%20Program%202013-2020_Moscow_Russian%20Federation_11-6-2012.pdf).

WTO. 2012. Certification of Modifications and Rectifications to Schedule CXL-European Communities. WT/Let/868.